

##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(제23조제1항 관련)

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(법 제19조제5항제1호 관련)

| 대상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감면비율(퍼센트) |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전산지      | 준보전산지 |
| 가. 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(휴게시설과 대기실은 제외한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      | 100   |
| 나. 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      | 100   |
| 다. 삭제 <2020. 11. 24.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|
| 라.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및 고속철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      | 100   |
| 마. 공용청사, 재해방지시설, 국립묘지, 공설묘지, 생태통로 등 야생 동·식물보호시설, 공원시설, 폐기물처리시설 및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림공익시설 | 100       | 100   |
| 바.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·군사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      | 100   |
| 사. 저수지·소류지·수로 등 농지개량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      | 100   |
| 아.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·정비 및 활용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      | 100   |
| 자.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      | 100   |
| 차. 「수도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      | 100   |
| 카. 「농어촌도로 정비법」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(휴게시설과 대기실은 제외한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      | 100   |
| 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도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      | 100   |
| 파. 삭제 <2020. 11. 24.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|
| 하.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3조에 따른 국립·공립 박물관 또는 국립·공립 미술관과 「도서관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           | 100       | 100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|
| 거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46조제1항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 중 가목부터 하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용·공공용 시설 | 50 | 50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|

2.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 
(법 제19조제5항제2호 관련)

| 대상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감면비율(퍼센트) |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전산지      | 준보전산지 |
| 가.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 사업을 위한 시설(「농어촌정비법」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에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 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·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| 100       | 100   |
| 나. 「특정연구기관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      | 100   |
| 다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8조에 따라 지정받는 벤처기업집적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      | 100   |
| 라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. 다만,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재생에너지설비는 제외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      | 100   |
| 마. 관계 법령 또는 인·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(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되는 산업시설(다른 감면 대상 시설과 중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      | 100   |
| 바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7년 이내에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      | 100   |
| 사. 「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      | 100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
|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이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·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과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, 일반산업단지,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|     |     |
| 아. 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」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인공위성 발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우주센터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| 100 |
| 자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 및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   | 100 |
| 차. 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(규모가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만 해당한다)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관광단지 및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)                     | 0   | 100 |
| 카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(창고업으로서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은 제외한다) 및 물류단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
| 1) 국가·지방자치단체, 공기업·준정부기관,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   | 100 |
| 2) 그 밖의 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   | 50  |
| 타. 공기업·준정부기관·지방공사·지방공단 또는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  | 50  |
| 1) 「공항시설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
| 2) 「수도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
| 3)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및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
| 4) 「하천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|
| 5) 「어촌·어항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|
| 6)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|
| 7)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 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|
| 8) 「전원개발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|
| 9)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 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|
| 10)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|
| 11)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|
| 12)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|
| 과.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시설. 다만,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와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.   | 50 | 50  |
| 하.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62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147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 중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의 시설 | 50 | 50  |
| 거. 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」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. 다만,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와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.              | 0  | 50  |
| 너. 「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  | 50  |
| 더. 「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4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에 설치하는 시설. 다만,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와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       | 50 | 100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|
| 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|
| 러. 「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17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| 0 | 50 |

3.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(법 제 19조제5항제3호 관련)

| 대상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감면비율(퍼센트) |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전산지      | 준보전산지 |
| 가. 농림어업인등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이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, 「농어촌도로 정비법」 제4조제2항 제3호에 따른 농도 및 「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      | 100   |
| 나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설 용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      | 100   |
| 다.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18조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(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미술관만 해당한다)과 「도서관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립 공공도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      | 100   |
| 라. 「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      | 100   |
| 마. 농림어업인등 또는 「산림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<br>1)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<br>2) 양어장·양식장·실외낚시터시설<br>3) 농림어업용 온실·버섯재배시설<br>4) 축산시설(가축사육시설 및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) | 100       | 100   |
| 바. 「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지정하여 등록된 전통사찰이 불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과 진입로·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      | 100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
| 사. 관계 법령 또는 인·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(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되는 공용·공공용시설 및 재해방지시설(다른 감면 대상 시설과 중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 | 100 | 100 |
| 아. 「초지법」에 따라 조성된 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  | 100 |
| 자. 광물의 채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   | 100 |
| 차. 비영리법인이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에서 「의료법」 제33조에 따라 개설하는 의료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   | 100 |
| 카. 비영리법인이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그 복지시설에 입소 중 사망하는 자를 위하여 설치하는 봉안시설(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사설봉안시설을 말한다)                    | 0   | 100 |
| 타.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   | 100 |
| 파.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   | 100 |
| 하.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  | 50  |
| 거. 「방사성폐기물 관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  | 50  |
| 너. 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21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에 설치하는 시설. 다만,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         | 0   | 50  |
| 더.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. 다만,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| 0   | 50  |
| 러.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(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으로 한정한다)에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   | 50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
| <p>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, 2017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,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청한 시설. 다만,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의 시설은 제외한다.</p> <p>1)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</p> <p>2)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</p> |     |     |
| <p>머. 「한국도로공사법」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설치하는 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(휴게시설과 대기실은 제외한다)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| 100 |
| <p>버. 「한국수자원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댐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| 100 |
| <p>서. 「한국철도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설치하는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및 고속철도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| 100 |
| <p>어.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(제1호·제2호 및 제3호가목부터 서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 한정한다)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| 100 |

※ 비고

1. 제1호거목의 공용·공공용시설 중 제2호·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시설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비율은 다음의 감면비율 중 가장 높은 감면비율을 적용한다.

가. 제1호거목의 공용·공공용 시설에 적용하는 감면비율

나. 제2호·제3호 각 목의 해당시설에 적용하는 감면비율

1의2. 제2호자목에도 불구하고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 준보전산지에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,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퍼센트를 감면한다. 다만,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로 조성하는 경

우와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.

2. 제2호자목·차목·카목·과목·하목·거목 및 제3호너목·더목·러목의 지역·지구·구역에 제2호·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시설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비율은 다음의 감면비율 중 가장 높은 감면비율을 적용한다.

가.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지역·지구·구역에 적용하는 감면비율

나. 제2호·제3호 각 목의 해당시설에 적용하는 감면비율

3. 제3호가목에서 "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"이란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실제 거주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산지에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.

4. 제3호마목에서 "농림어업인등"이란 농림어업인,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,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.

5. 비고 제4호에서 "농림어업인"이란 「농지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,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호의 임업인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), 같은 조 제2호·제3호의 임업인 및 「수산업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.

6.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산지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한다.

- 6의2. 법률 제1325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필요한 산지전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산지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한다.

7. 삭제 <2020. 11. 24.>